

특허 침해권(I)

통상실시권 받은 업체에서 물건을 공급받아 판매할 경우

Q A특허의 통상실시권을 받은 K업체에서 제작된 물건을 공급받아 판매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실시권 계약 없이도 그 제품을 판매해도 됩니까?

A A특허의 통상실시권을 받은 K업체에서 제작한 물건을 공급받아 판매하고자 한 경우에 특허권자가 K업체에 계약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했으므로 통상실시권 허락으로 인해 특허권은 소진론에 의해 K업체에서 제작한 물건을 귀하가 공급받아 판매해도 일반적으로 특허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허침해에 대한 경고장을 보내려 할때

Q 제3자가 특허발명을 침해하고 있어 경고장을 보내려고 하는데, 경고장을 보낼 때의 방법과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A 경고장은 변리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도 권리자 또는 출원인이 직접 무단침해자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보내는 목적은 특허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발명임을 상대방에게 알려 보상금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행위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과 권리침해에 따른 구제조치의 청구가 가능함을 주장하고, 특허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발명임을 증명하는 서류(공개 또는 등록공보, 특허증 등)를 첨부하여 우체국의 내용증명 등으로 송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의 권리 행사 여부

Q 특허권자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지 않을 때라도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또한 침해시 구제수단은 무엇입니까?

A 설정등록된 특허권은 독점배타권을 가지므로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특허침해시 그 침해에 대한 법적구제 수단으로는 (1)민사적 구제수단으로써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형사적 구제수단으로는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특허권자는 「고소」하여 침해죄를 추궁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등에 있어서는 「침해자(종업원)」와 「법인(사용자) 등」에게 양벌규정이 적용되며, 침해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석현 변리사

현국제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한 바 있고, 이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 대표 변리사를 지냈다. 현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100여 명의 전문가들이 one-stop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총정에서 특허부 총괄을 맡고 있다.
문의 : (02)772-2786
e-mail : kimsh@hmpj.com